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_일반사망형 전 체 목 차

I.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 요약서	1-12
II. 주계약 약관	1-60
III. 특약 약관	
·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1-2
·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1-4
IV. 법령 부록	1-28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

(일시납) 무배당_일반사망형

약관

[2026년 7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 약관 이용 가이드북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약관 주요내용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주계약&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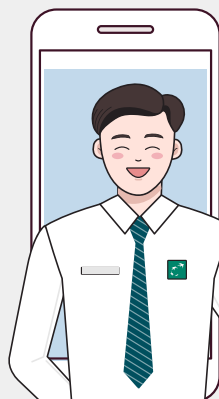
주계약: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보통약관
특 약: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특별약관



용어해설 및
법률정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보험용어 해설**, 관련 법률 등을
보험약관 본문과 부록에서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스마트폰으로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관련 내용을 영상 자료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해설
(종합편)



영상 자료

보험금
청구 안내



홈페이지

계약확인
및 관리



모바일 앱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에 해당되는 **조문 및 영상 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①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영상 자료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청약 철회

제29조(청약의 철회)



영상 자료

③ 계약 취소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영상 자료

④ 계약 무효

제31조(계약의 무효)



영상 자료

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2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영상 자료

⑥ 보험료의 납입최고 및 해지

제40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영상 자료

⑦ 부활(효력회복)

제41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42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영상 자료

⑧ 해약환급금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47조(해약환급금)



영상 자료

⑨ 보험계약대출

제51조(보험계약대출)



영상 자료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6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요약서 P5**
- ②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을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항목 P3**
- ③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약관 해설 영상 자료, 보험금 청구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P2**
- ④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용어해설, 약관 본문 내 해설과 사례**를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약관 본문**
- ⑤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약관 부록**
- ⑥ 약관 본문 중 **다른 컬러**로 표기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등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cardif.co.kr), **고객센터**(1688-1118)로 문의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Ⅰ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사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상품명: **시그니처 시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일반사망형

보험상품의 종류: **변액연금보험**



시그니처 시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일반사망형

①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② **변액연금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연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실적배당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가능



변액보증

최저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예금자보호

최저사망보험금,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함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펀드(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된 금액이 펀드(특별계정)로 투입·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액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 이 보험은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 없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보험가입 시 약정된 금액에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계약자적립액을 더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에 펀드(특별계정)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합니다.
- 이 상품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 상품의 주요 특성

① 저축성보험



- ①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생명보험 고유의 위험 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장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상품입니다.
- ③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변액보험



- ① 이 보험은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펀드(특별계정)로 투입·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액에서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투자에 대한 고민 중 모집인 B씨를 통해 변액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한지 5년이 지난 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

→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됨**을 안내



③ 예금자보호제도



- ①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②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다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
- ③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II 소비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2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펀드관련 특별계정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②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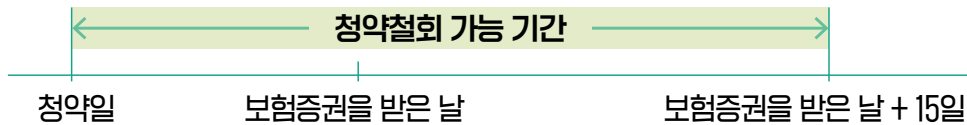


01 |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주의

- ① **청약일부러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가 체결한 계약**

02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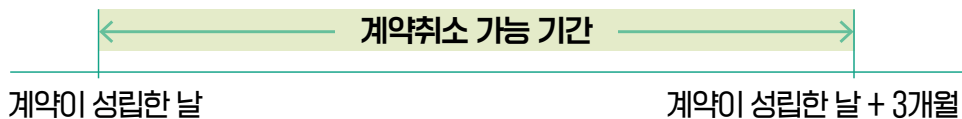
주계약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03 |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만5세 미만자, 임신상실자 또는 임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4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주계약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주의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5 | 계약의 소멸

주계약 약관

계약의 소멸

이 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06 | 보험료의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07 |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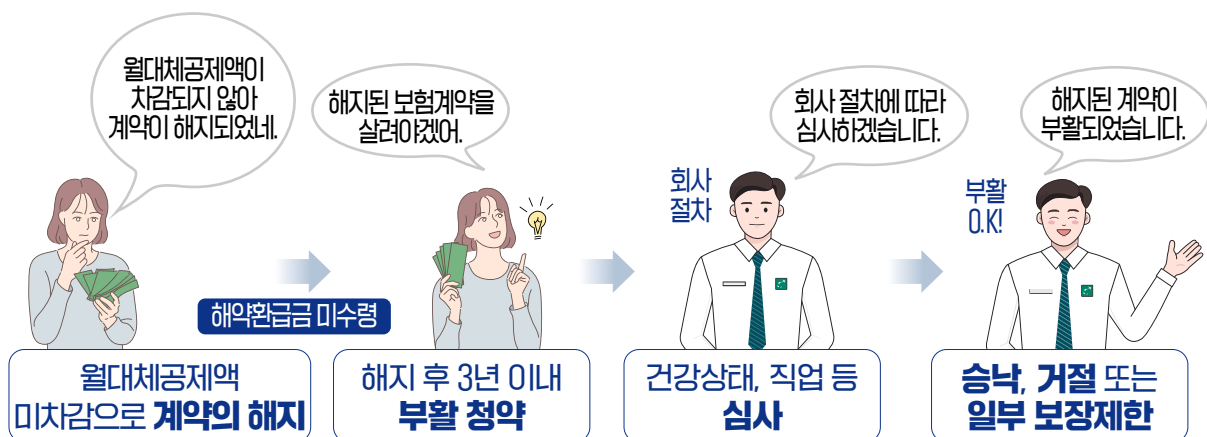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8 | 보험계약대출

주계약 약관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 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 만원	500 만원	5 만원	505 만원	495 만원



-



=



09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약관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주의

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확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사전 미등록 계좌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추가됩니다.

시그니처 시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주계약 약관

2026년 7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목 차

보험용어해설	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1조【목적】	6
제2조【용어의 정의】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2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3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4
제7조【보험금의 청구】	14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5
제9조【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16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7
제11조【주소변경통지】	17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7
제13조【대표자의 지정】	18
제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18
제14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18
제15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19
제16조【펀드의 유형】	19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21
제18조【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22
제19조【평균분할투자에 관한 사항】	23
제20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25
제21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25
제22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5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25
제24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26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7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27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7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29
제5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9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29
제29조【청약의 철회】.....	30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1
제31조【계약의 무효】.....	32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33
제33조【일반계정으로 전환】.....	35
제34조【보험나이 등】.....	36
제35조【계약의 소멸】.....	36
제36조【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37
제6관 보험료의 납입	37
제3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7
제38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38
제39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38
제40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9
제41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0
제42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2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42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42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43
제4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3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4

제4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44
제47조【해약환급금】	45
제4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46
제49조【자동인출서비스】	47
제50조【노후설계자금의 인출】.....	48
제51조【보험계약대출】	48
제52조【배당금의 지급】.....	49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49
제53조【분쟁의 조정】.....	49
제54조【관할법원】	49
제55조【소멸시효】	49
제56조【약관의 해석】.....	50
제5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0
제5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0
제59조【개인정보보호】	51
제60조【준거법】.....	51
제6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2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53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57
[별표3] 재해분류표	59

보험용어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보험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_일반사망형 약관

※ 약관조항에 대한 '해설' 또는 '사례'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
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 조【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계약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③ 제 2 항 제 2 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종신연금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전에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5 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연금유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후 원리금

- 1년 후 원리금:

$$\frac{100\text{원} + 10\text{원}(100\text{원} \times 10\%)}{\text{원금} \quad \text{1년차 이자}} = 110\text{원}$$

- 2년 후 원리금:

$$\frac{\{100\text{원} + 10\text{원}(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 10\text{원}(100\text{원} \times 10\%)\} \times 10\%}{\text{2년차 원금(1년 후 원리금)} \quad \text{2년차 이자}} = 121\text{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변액보험 등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108 조 제 1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해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 법 제 10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적립액: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자적립액】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제 4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바.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달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사.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 이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아.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의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기본보험료의 2 배+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합계액」 이내로 합니다.
- 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 위험보험료: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 중 「기본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카. 월대체공제액: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부가하는 금액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말하며,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동조 제 3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산출할 때 또는 제 18 조(채

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제 2 항 목표수익률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3 항 및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 5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파. 최저사망보험금: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사망 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거.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너.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더.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러.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머.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버.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서. 일반계정으로 전환: 제 33 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보험기간 동안 운용된 계약자적립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노후설계자금: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비율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선택된 계약자적립액은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고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제 50 조(노후설계자금의 인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파목의 '최저사망보험금'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의 지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2. 피보험자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 44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④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2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해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회사가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④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 5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9 조【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써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합니다.

1.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를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펀드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대량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
다.

제 11 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
입니다.

제 12 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
은 조 제 2 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해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 13 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해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는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 3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제 14 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너목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15 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 1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 2 조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 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AI 멀티팩터주식형: 국내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95%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AI 글로벌주식형: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95%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

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3. AI 글로벌혁신테마형: 시장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외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4. AI 딥러닝자산배분형: 퀀트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외 ETF 를 활용한 자산 배분으로 글로벌 자산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 (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5. 국내채권 ETF 재간접형: 국내 채권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또는 채권 ETF 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6. 채권 ETF 재간접형: 국내 채권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ETF 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7. 글로벌채권 ETF 재간접형: 미국 채권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또는 채권 ETF 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8. 골드 ETF 재간접형: 금(金)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9. 달러 ETF 재간접형: 미국 달러와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10. 리츠 ETF 재간접형: 리츠와 관련된 주식[리츠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ETF 에 주로 투자]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1. MMF 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국내 단기채권 및 현금성 자산(회사채, 기

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 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12. 타겟채권 ETF 재간접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하며, 중장기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대출 채권형 펀드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13.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국내 단기채권 및 현금성 자산(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 형 펀드] 또는 유동성에 투자하는 ETF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② 제 1 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12 호까지의 판매 중인 펀드 내에서 1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때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 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② 계약자는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12 호까지의 판매 중

인 펀드 내에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펀드별 편입 비율 변경을 보험기간 중 매년 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른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 23 조(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4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 3 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다시 이전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⑤ 제 1 항에서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을 경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제16조(펀드의 유형) 제1항 제6호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자동 이전하는 기능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105%부터 200%까지의 수익률 중 5% 단위의 수익률 한 가지를 목표수익률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액}}{\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을 경우,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제16조(펀드의 유형)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합니다. 이 경우 「목표수익률 도달일+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해설: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되는 금액】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액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더라도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 ④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자동 이전된 이후에 납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1항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투입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된 후에도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의 펀드를 변경한 경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⑦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도달 전에는 목표수익률의 신규설정, 변경 및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이때, 변경하려는 목표수익률은 변경신청일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수익률을 초과해야 합니다.
- ⑧ 제 19 조(평균분할투자에 관한 사항) 제 1 항에서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한 경우 최초 가입을 할 때부터 평균분할투자 기간이 끝나는 동안 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평균분할투자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평균분할투자를 최초 가입을 할 때부터 특별계정으로 이체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보험료에 대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액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3 호에서 정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이체됩니다.
- ② 계약자가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펀드의 투입비율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를 신청한 날+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펀드의 잔여 금액 전부를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합니다. 다만, 특별계정 이체 전 취소의 경우 해당 기능만 적용 해제처리 합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이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 1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기간(2~36 개월 월단위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마다 제 17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 1 항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로 자동이체 됩니다. 다만, 월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이체됩니다. 이 때,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총좌수를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에는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⑤ 보험료의 납입 등으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좌수가 증가하였을 때에는 증가일부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증가일의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총좌수를 [평균분할투자기간의 개월 수 - 기존 평균분할투자 경과월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의 경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좌수가 감소하였을 때에는 감소일부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감소일의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총좌수를 [평균분할투자기간의 개월 수 - 기존 평균분할투자 경과월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의 경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발생한 경우
2.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3. 월대체공제액이 차감된 경우

⑦ 제 18 조(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제 1 항에서 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한 경우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 21 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당일 특별계정의 총부채 및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너목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22 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23 조【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 1 호에서 제 3 호에 준하는 경우

【해설: 원본액】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특별계정에 실제 투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제 17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 24 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 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4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7 조【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 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5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28 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해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 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1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해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을 재발행 합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계약자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선택비율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4. 연금지급 개시나이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2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로 가입할 때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감액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액}}$$

④ 회사는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총 3 가지의 연금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를 2 가지 이상 선택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1% 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연금지급형태】

1. 종신연금형: 10 년, 15 년, 20 년, 30 년, 100 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2. 상속연금형
3. 확정연금형: 5 년부터 40 년까지 중 선택한 기간에 따라 확정지급

⑥ 제 5 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자는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50%이내에서 5% 단위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

율과 각 연금지급형태 별 선택비율의 총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⑨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⑩ 계약자가 제 9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해설: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3 조【일반계정으로 전환】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의 운용에 있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아래 제 1 호에서 제 3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1. 보험계약일로부터 3 년 이상 지난 계약
2.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3.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③ 제 2 항에서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제 3 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또한, 전환된 계약의 전환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일의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의 110%'에 미달하거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일반계정으로 전환 신청은 취소되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제 34 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31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보기관 발행 신분증을 말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④ 제 3 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해약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2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5년 4월 13일

⇒ 2025년 4월 13일 - 1992년 10월 2일 = 32년 6월 11일 = 33세

제 35 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연금지급 개시 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6 조【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보험료의 납입 |||||

제 37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해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으며, 초과된 보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38 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 된 계약의 경우에도 전환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제 1 항의 추가납입보험료는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아목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은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 39 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계약의 경우 전환일 전까지 납입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 ③ 제 1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약일로부터 30 일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제 3 영업일」로 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보험료 납입일+제 3 영업일」로 합니다. 다만,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 3.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 3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 28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4 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29 조(청약의 철회) 제 4 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3 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 3 호 및 제 4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1 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대체공제액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부가되는 계약관리비용 이상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제 2 항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④ 제 3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일+제 3 영업일」
2. 보험료 납입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 3 영업일」

⑤ 제 2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2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8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 및 제 3 항 및 제 37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 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⑥ 제 2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로 계약을 청약시(2 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⑦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할 때에는 제 3 항 및 제 4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⑧ 변액보험은 제 2 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 43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2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연금이 지

급개시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 31 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2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3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7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⑥ 제47조(해약환급금)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가 제1항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44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45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6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및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해설: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 함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을 말합니다.

【해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중금리를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해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5년 동안 0.7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0.75%)로 적립됩니다.

제 47 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제 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항, 제 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 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⑦ 제 43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리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계정으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은 「인출신청일+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은 인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또는 200 만원 중 큰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 후 10 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출금은 인출일을 기준으로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 ⑤ 제 1 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최저사망보험금을 산출할 때 또는 제 18 조(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제 2 항 목표수익률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인출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액}}$$

【사례: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예시】

(다만, 인출시점이 계약 후 10년 이내인 경우)

- 기본보험료(납입보험료 총액) 1,000만원
-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 1,200만원
- 인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1,200만원

①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의 60% 범위 내: 1,200만원 × 60% = 720만원

②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해당액 또는 2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 1,200만원 - Max[(1,000만원 × 3%), 200만원] = 1,000만원

③ 납입보험료 총액 이내: 1,000만원

∴ 계약자적립액 인출가능금액은 Min[①, ②, ③] = 720만원

(다만, 이전 인출이 없을 경우)

⑥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도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자동인출서비스】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정한 일정금액을 제4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의한 인출금으로 하여 매월 자동으로 지급받는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자동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서비스기간 및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의 자동인출금액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인출서비스기간의 종료일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기간의 종료일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③ 자동인출서비스에 의한 인출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신청일(신청일부터 한달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신청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지급일'이라 합니다)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마다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인출서비스는 즉시 종료됩니다. 이때, 그 사유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계약자가 자동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인출시점의 인출금액이 제4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지급계좌 오류 등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인출금액 지급에 실패한 경우
4. 제33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

⑤ 자동인출서비스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50 조【노후설계자금의 인출】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노후설계자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설계자금의 일부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 53 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54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해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56 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57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여부와 보험금 지급금액에 관하여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크게 불리하고 회사에 크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59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60 조【준거법】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6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 사망보험금(약관 제3조 제1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보험금 청구일+제3영업일] 의 계약자적립액

-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약관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마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대체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상기 표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의 10%+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약관 제3조 제2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연금사망률, 공시이율, 보증지급기 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 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중 선택

■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의 지급내용(약관 제32조 제1항 제3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종신 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 로 연금사망률, 공시이율, 보증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첫번째 연금월액 (연금지급 개시시점)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 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시이 율을 적용한 1개월 후의 이자 상당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으 로 할인한 금액 - 두번째 이후 연금월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 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첫번 째 연금월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한 1개월간의 이자 상당액 ※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연금월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연금형 선택비율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정한 연금지급기간(5년~4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 연금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약관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마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3.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4.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 후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일반계정으로 전환' 후에는 공시이율)」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 18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 년 이상으로 합니다.
8.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액 잔여분을 선지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9.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 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 년 초과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10.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 년~40 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11.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50%이내에서 5% 단위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약관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5 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 가지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1% 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과 각 연금지급형태 별 선택비율의 총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12. 노후설계자금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노후설계자금에서 매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노후설계자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13. 연금지급 개시 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47조 제5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종신연금 상속연금 및 확정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 날) 이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4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47조 제2항)	「청구일+제3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종신연금, 상속연금 및 확정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선택한 경우 상기 연금은 노후설계자금을 포함하며,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의 종료일을 해당 노후설계자금의 보험기간 만기일로 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55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적용이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5-299 호, 2026.1.1 시행)상의 분류 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제 10 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특약 약관

2014년 4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약관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특약의 적용】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변액보험 계약이고, 주계약의 계약자가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펀드 이외에 회사가 새로이 추가한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적용시점에 부가된 전환특약 등을 통하여 주계약이 변액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펀드 추가 및 계약자 안내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른 변액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펀드를 주계약의 펀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추가된 펀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서면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펀드 명칭 및 주요 투자대상
 2. 특별계정 운용보수(운행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
 3. 펀드 선택 제한 사항
 4. 기타 펀드 및 운영에 관한 특이사항 등

제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펀드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펀드 추가 및 계약자 안내에 관한 사항)에 따라 추가된 펀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펀드 선택 또는 변경에 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을 정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특약 약관**

2023년 1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 잃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3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따라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설: 할증위험률】

할증위험률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을 말합니다.

【해설: 표준체】

표준체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반위험률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계약자적립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되는 경우 계약자적립액에는 삭감기간별 보험금지급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별 보험금지급비율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1 년 이내	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 년 초과 2 년 이내			60%	50%	40%	30%
2 년 초과 3 년 이내				75%	60%	45%
3 년 초과 4 년 이내					80%	60%
4 년 초과 5 년 이내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설: 보험금이 계약자적립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되는 적용 예시】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료의 1,000% + 계약자적립액』인 경우 보험금감액법에 의해 삭감지급되는 보험금의 계산은 『기본보험료의 1,000% * 삭감기간별 보험금지급비율 +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가 실제 n 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 년증이라 칭하고 n 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 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 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제 5 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해설: 감액완납보험】

감액완납보험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 연장보험】

연장보험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7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령 부록

2026년 1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가나다 순)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은 2026년 1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

-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

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17조(적합성원칙)

① (생략)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 (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생략)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생략)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

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생략)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서

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 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이하 생략)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생략)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하 생략)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 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

- 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

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상태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_재해장해형 전 체 목 차

I.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 요약서	1-12
II. 주계약 약관	1-91
III. 특약 약관	
·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1-2
·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1-4
IV. 법령 부록	1-28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

(일시납) 무배당_재해장해형

약관

[2026년 7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 약관 이용 가이드북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약관 주요내용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주계약&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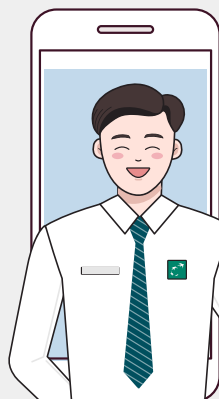
주계약: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보통약관
특 약: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특별약관



용어해설 및
법률정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보험용어 해설**, 관련 법률 등을
보험약관 본문과 부록에서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스마트폰으로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관련 내용을 영상 자료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해설
(종합편)



영상 자료

보험금
청구 안내



홈페이지

계약확인
및 관리



모바일 앱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에 해당되는 **조문 및 영상 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①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영상 자료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청약 철회

제29조(청약의 철회)



영상 자료

③ 계약 취소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영상 자료

④ 계약 무효

제31조(계약의 무효)



영상 자료

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2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영상 자료

⑥ 보험료의 납입최고 및 해지

제40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영상 자료

⑦ 부활(효력회복)

제41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42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영상 자료

⑧ 해약환급금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47조(해약환급금)



영상 자료

⑨ 보험계약대출

제51조(보험계약대출)



영상 자료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6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요약서 P5**
- ②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을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항목 P3**
- ③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약관 해설 영상 자료, 보험금 청구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P2**
- ④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용어해설, 약관 본문 내 해설과 사례**를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약관 본문**
- ⑤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약관 부록**
- ⑥ 약관 본문 중 **다른 컬러**로 표기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등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cardif.co.kr), **고객센터**(1688-1118)로 문의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Ⅰ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사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상품명: **시그니처 시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재해장해형

보험상품의 종목: **변액연금보험**



시그니처 시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재해장해형

❶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❷ **변액연금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실적배당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가능



변액보증

최저사망적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예금자보호

최저사망적립액,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함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과 해약환급금이 펀드(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된 금액이 펀드(특별계정)로 투입·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액에서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 이 보험은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다만,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사망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이 상품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이 보험에는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없습니다.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	-	해당없음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 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구분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	-	해당없음

보장한도

최초
1회한

이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한도(보장한도)** 적용 담보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담보명	지급한도
주계약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최초 1회 에 한하여 보장

02 | 상품의 주요 특성

①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
주의

- ①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생명보험 고유의 위험 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장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상품입니다.
- ③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② 변액보험



주의

- ① 이 보험은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펀드(특별계정)로 투입·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액에서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투자에 대한 고민 중 모집인 B씨를 통해 변액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한지 5년이 지난 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

→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됨**을 안내



③ 예금자보호제도



주의

- ①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②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다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
- ③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03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 ①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며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및 펀드관련 특별계정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②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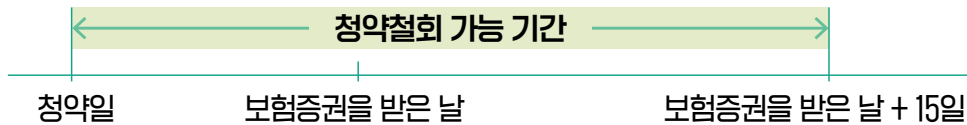


01 |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주의

- ① **청약일부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02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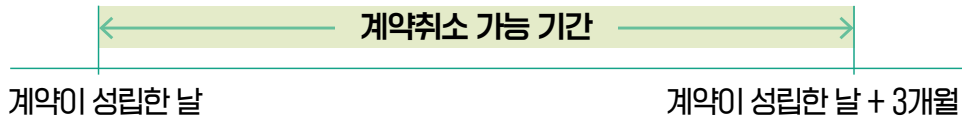
주계약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03 |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4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주계약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주의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5 | 계약의 소멸

주계약 약관

계약의 소멸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06 | 보험료의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07 |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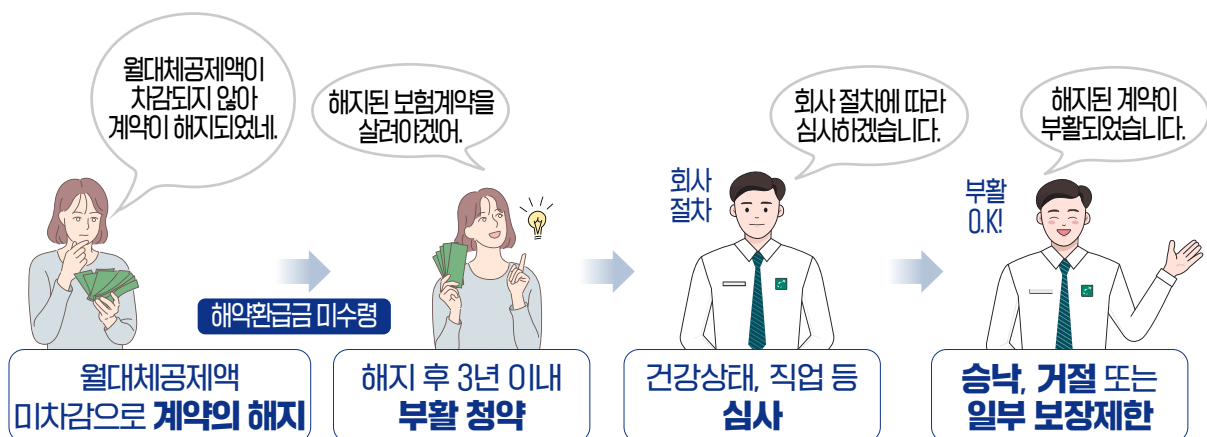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8 | 보험계약대출

주계약 약관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 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 만원	500 만원	5 만원	505 만원	495 만원



-



=



09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약관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주의

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확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확인서류	공동
사망	● [사망진단서]					●
장해	● [장해진단서]					●

※공동서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사전 미등록 계좌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추가됩니다.

시그니처 시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

주계약 약관

2026년 7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목 차

보험용어해설	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1조【목적】	6
제2조【용어의 정의】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2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4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4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14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5
제9조【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16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7
제11조【주소변경통지】	17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8
제13조【대표자의 지정】	18
제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18
제14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18
제15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19
제16조【펀드의 유형】	19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21
제18조【채권ETF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22
제19조【평균분할투자에 관한 사항】	23
제20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25
제21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25
제22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5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26
제24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26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7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27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7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29
제5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9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29
제29조【청약의 철회】	30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1
제31조【계약의 무효】.....	33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33
제33조【일반계정으로 전환】.....	35
제34조【보험나이 등】.....	35
제35조【계약의 소멸】.....	36
제36조【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37
제6관 보험료의 납입	37
제3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7
제38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38
제39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39
제40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0
제41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1
제42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2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43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43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43
제4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4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4
제4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44
제47조【해약환급금】	45
제4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46
제49조【자동인출서비스】	48

제50조【노후설계자금의 인출】.....	48
제51조【보험계약대출】	49
제52조【배당금의 지급】.....	49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49
제53조【분쟁의 조정】.....	49
제54조【관할법원】	50
제55조【소멸시효】	50
제56조【약관의 해석】.....	50
제5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0
제5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1
제59조【개인정보보호】	51
제60조【준거법】.....	52
제6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2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53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57
[별표3] 재해분류표	59
[별표4] 장해분류표	61

보험용어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보험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시그니처 AI변액연금보험(일시납) 무배당_재해장해형 약관

※ 약관조항에 대한 '해설' 또는 '사례'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
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 조【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계약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정한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③ 제 2 항 제 2 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종신연금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전에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5 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연금유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후 원리금

- 1년 후 원리금:

$$\frac{100\text{원} + 10\text{원}(100\text{원} \times 10\%)}{\text{원금} \quad \text{1년차 이자}} = 110\text{원}$$

- 2년 후 원리금:

$$\frac{\{100\text{원} + 10\text{원}(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 10\text{원}(100\text{원} \times 10\%)\} \times 10\%}{\text{2년차 원금(1년 후 원리금)} \quad \text{2년차 이자}} = 121\text{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변액보험 등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108 조 제 1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해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 법 제 10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적립액: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자적립액】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제 4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공시 이율' 이라 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달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사.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 이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아.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 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의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기본보험료의 2 배+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합계액」 이내로 합니다.

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 위험보험료: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카. 월대체공제액: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부가하는 금액 및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말하며,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동조 제 3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인출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 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최저사망적립액을 산출할 때 또는 제 18 조(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제 2 항 목표수익률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3 항 및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 5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파. 최저사망적립액: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계약자적립액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 시점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하.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액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 거.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너.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더.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러.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머.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버.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

니다.

서. 일반계정으로 전환: 제 33 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보험기간 동안 운용된 계약자적립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노후설계자금: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비율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선택된 계약자적립액은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고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제 50 조(노후설계자금의 인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고도재해장해보험금(다만,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의 지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⑧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는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⑨ 이 계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⑪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⑫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0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해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회사가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④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 5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9 조【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써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합니다.

1.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를 준하는 사유

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펀드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대량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 2 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 13 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해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는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 3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제 14 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 등을 차

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너목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15 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 1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 2 조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 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AI 멀티팩터주식형: 국내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95%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AI 글로벌주식형: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95%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3. AI 글로벌혁신테마형: 시장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외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4. AI 딥러닝자산배분형: 퀀트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외 ETF 를 활용한 자산 배분으로 글로벌 자산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5. 국내채권 ETF 재간접형: 국내 채권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또는 채권 ETF 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6. 채권 ETF 재간접형: 국내 채권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ETF 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7. 글로벌채권 ETF 재간접형: 미국 채권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또는 채권 ETF 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8. 골드 ETF 재간접형: 금(金)과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9. 달러 ETF 재간접형: 미국 달러와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ETF)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

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10. 리츠 ETF 재간접형: 리츠와 관련된 주식[리츠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ETF에 주로 투자]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1. MMF 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국내 단기채권 및 현금성 자산(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 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12. 타겟채권 ETF 재간접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하며, 중장기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대출 채권형 펀드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13.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국내 단기채권 및 현금성 자산(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 형 펀드] 또는 유동성에 투자하는 ETF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② 제 1 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12 호까지의 판매 중인 펀드 내에서 1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때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 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 ② 계약자는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12 호까지의 판매 중인 펀드 내에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펀드별 편입 비율 변경을 보험기간 중 매년 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른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 23 조(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4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 3 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다시 이전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⑤ 제 1 항에서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을 경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제16조(펀드의 유형) 제1항 제6 호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자동 이전하는 기능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105%부터 200%까지의 수익률 중 5% 단위의 수익률 한 가지를 목표수익률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액}}{\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을 경우,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제16조(펀드의 유형)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합니다. 이 경우 「목표수익률 도달일+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해설: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되는 금액】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자적립액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더라도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④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자동 이전된 이후에 납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1항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투입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채권ETF재간접형 펀드로 이전된 후에도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의 펀드를 변경한 경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⑦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도달 전에는 목표수익률의 신규설정, 변경 및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이때, 변경하려는 목표수익률은 변경신청일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수익률을 초과해야 합니다.

⑧ 제 19 조(평균분할투자에 관한 사항) 제 1 항에서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한 경우 최초 가입을 할 때부터 평균분할투자 기간이 끝나는 동안 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평균분할투자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평균분할투자를 최초 가입을 할 때부터 특별계정으로 이체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보험료에 대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액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3 호에서 정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이체됩니다.

② 계약자가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펀드의 투입비율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를 신청한 날+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펀드의 잔여 금액 전부를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합니다. 다만, 특별계정 이체 전 취소의 경우 해당 기능만 적용 해제처리 합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이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 1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기간(2~36 개월 월단위 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마다 제 17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 1 항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로 자동이체됩니다. 다만, 월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이체됩니다. 이 때,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총좌수를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에는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⑤ 보험료의 납입 등으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좌수가 증가하였을 때에는 증가일부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증가일의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총좌수를 [평균분할투자기간의 개월 수 - 기존 평균분할투자 경과월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의 경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좌수가 감소하였을 때에는 감소일부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감소일의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형 펀드의 총좌수를 [평균분할투자기간의 개월 수 - 기존 평균분할투자 경과월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회차의 경우, 자동이체되는 좌수는 평균분할투자 MMF 재간접

형 펀드의 잔여좌수로 합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발생한 경우
 2.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3. 월대체공제액이 차감된 경우
- ⑦ 제 18 조(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제 1 항에서 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한 경우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 21 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당일 특별계정의 총부채 및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너목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22 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

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23 조【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 1 호에서 제 3 호에 준하는 경우

【해설: 원본액】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특별계정에 실제 투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제 17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 24 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 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4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7 조【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 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5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28 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해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함

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 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1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을 재발행 합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계약자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선택비율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4. 연금지급 개시나이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2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로 가입할 때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감액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액}}$$

④ 회사는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총 3 가지의 연금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를 2 가지 이상 선택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1% 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연금지급형태】

1. 종신연금형: 10 년, 15 년, 20 년, 30 년, 100 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2. 상속연금형
3. 확정연금형: 5 년부터 40 년까지 중 선택한 기간에 따라 확정지급

⑥ 제 5 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자는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50%이내에서 5% 단위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과 각 연금지급형태 별 선택비율의 총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⑨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⑩ 계약자가 제 9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해설: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3 조【일반계정으로 전환】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의 운용에 있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아래 제 1 호에서 제 3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1. 보험계약일로부터 3 년 이상 지난 계약
 2.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3.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 ③ 제 2 항에서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제 3 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또한, 전환된 계약의 전환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일의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에 미달하거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일반계정으로 전환 신청은 취소되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제 34 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보기관 발행 신분증을 말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④ 제 3 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해약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2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5년 4월 13일

⇒ 2025년 4월 13일 - 1992년 10월 2일 = 32년 6월 11일 = 33세

제 35 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다만,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사망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미 공제된 월대체공제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⑥ 연금지급 개시 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6 조【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보험료의 납입

제 37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해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으며, 초과된 보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38 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 된 계약의 경우에도 전환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제 1 항의 추가납입보험료는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아목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은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 39 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계약의 경우 전환일 전까지 납입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③ 제 1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약일로부터 30 일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제 3 영업일」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보험료 납입일+제 3 영업일」로 합니다. 다만,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3.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 3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 28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4 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29 조(청약의 철회) 제 4 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3 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

- 로 전환하여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 3 호 및 제 4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 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1 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②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대체공제액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부가되는 계약관리비용 이상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제 2 항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④ 제 3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일+제 3 영업일」
 2. 보험료 납입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

낙일+제 3 영업일」

- ⑤ 제 2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2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8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 및 제 3 항 및 제 37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 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⑥ 제 2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로 계약을 청약시(2 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2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⑦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할 때에는 제 3 항 및 제 4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변액보험은 제 2 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 43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2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43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7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⑥ 제47조(해약환급금)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가 제1항의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44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45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47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6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및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해설: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 함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을 말합니다.

【해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중금리를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해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5년 동안 0.7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0.75%)로 적립됩니다.

제 47 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 항, 제 43 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⑦ 제 43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리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48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계정으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은 「인출신청일+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은 인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

보험료의 3%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출금은 인출일을 기준으로 추가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⑤ 제 1 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최저사망적립액을 산출할 때 또는 제 18 조(채권 ETF 재간접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제 2 항 목표수익률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인출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액}}$$

【사례: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예시】

(다만, 인출시점이 계약 후 10년 이내인 경우)

- 기본보험료(납입보험료 총액) 1,000만원
-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 1,200만원
- 인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1,200만원

①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의 60% 범위 내: 1,200만원 × 60% = 720만원

②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해당액 또는 2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 1,200만원 - Max[(1,000만원 × 3%), 200만원] = 1,000만원

③ 납입보험료 총액 이내: 1,000만원

∴ 계약자적립액 인출가능금액은 Min[①, ②, ③] = 720만원

(다만, 이전 인출이 없을 경우)

⑥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도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자동인출서비스】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정한 일정금액을 제4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의한 인출금으로 하여 매월 자동으로 지급받는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자동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서비스 기간 및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의 자동인출금액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인출서비스기간의 종료일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기간의 종료일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③ 자동인출서비스에 의한 인출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신청일(신청일부터 한달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신청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지급일'이라 합니다)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마다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인출서비스는 즉시 종료됩니다. 이때, 그 사유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계약자가 자동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인출시점의 인출금액이 제4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지급계좌 오류 등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인출금액 지급에 실패한 경우
4. 제33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

⑤ 자동인출서비스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50 조【노후설계자금의 인출】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노후설계자금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노후설계자금의 일부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40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 53 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54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해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56 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57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여부와 보험금 지급금액에 관하여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크게 불리하고 회사에 크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59 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60 조【준거법】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6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 고도재해장해보험금(약관 제3조 제1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재해장해 보험금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기본보험료의 20%

- (주) 1.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청구
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다만, 「계약자적립액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
약자적립액이 최저사망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
액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
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정
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
대체공제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
후의 월대체공제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더 이상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약관 제3조 제2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연금사망률, 공시이율, 보증지급기 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 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중 선택

■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의 지급내용(약관 제32조 제1항 제3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종신 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 로 연금사망률, 공시이율, 보증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첫번째 연금월액 (연금지급 개시시점)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 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시이 율을 적용한 1개월 후의 이자 상당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으 로 할인한 금액 - 두번째 이후 연금월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 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첫번 째 연금월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한 1개월간의 이자 상당액 ※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연금월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연금형 선택비율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정한 연금지급기간(5년~4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 연금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공시이율 변동을 반영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약관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마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이 계약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그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3.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4.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 후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일반계정으로 전환' 후에는 공시이율)」 및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 18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 년 이상으로 합니다.
8.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액 잔여분을 선지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9.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 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 년 초과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10.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 년~40 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합니다.
11.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50%이내에서 5% 단위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약관 제 3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5 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 가지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1% 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과 각 연금지급형태 별 선택비율의 총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12. 노후설계자금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노후설계자금에서 매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노후설계자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13. 연금지급 개시 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노후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47조 제5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급이자
고도재해장 해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종신연금 상속연금 및 확정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 날) 이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4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47조 제2항)	「청구일+제3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종신연금, 상속연금 및 확정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선택한 경우 상기 연금은 노후설계자금을 포함하며,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의 종료일을 해당 노후설계자금의 보험기간 만기일로 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55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적용이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5-299 호, 2026.1.1 시행)상의 분류 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제 10 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별표4]

장해분류표

■ ■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

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 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

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 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 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 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미만)	0
기능 장애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

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 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인접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

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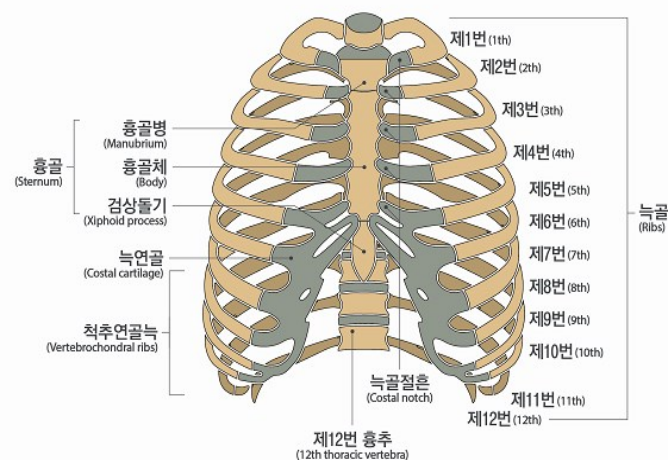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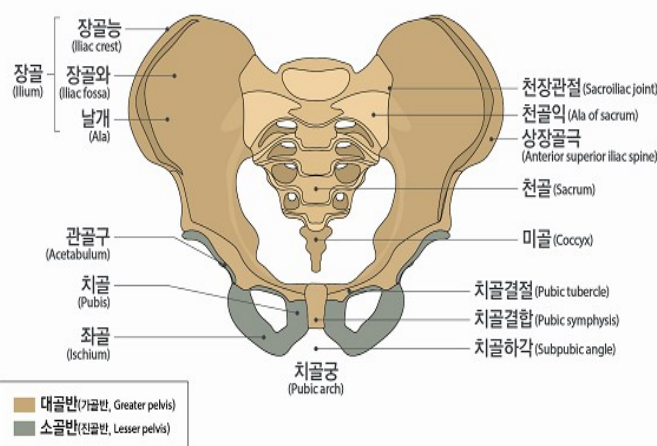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빋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 (손목관절 포함)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

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 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지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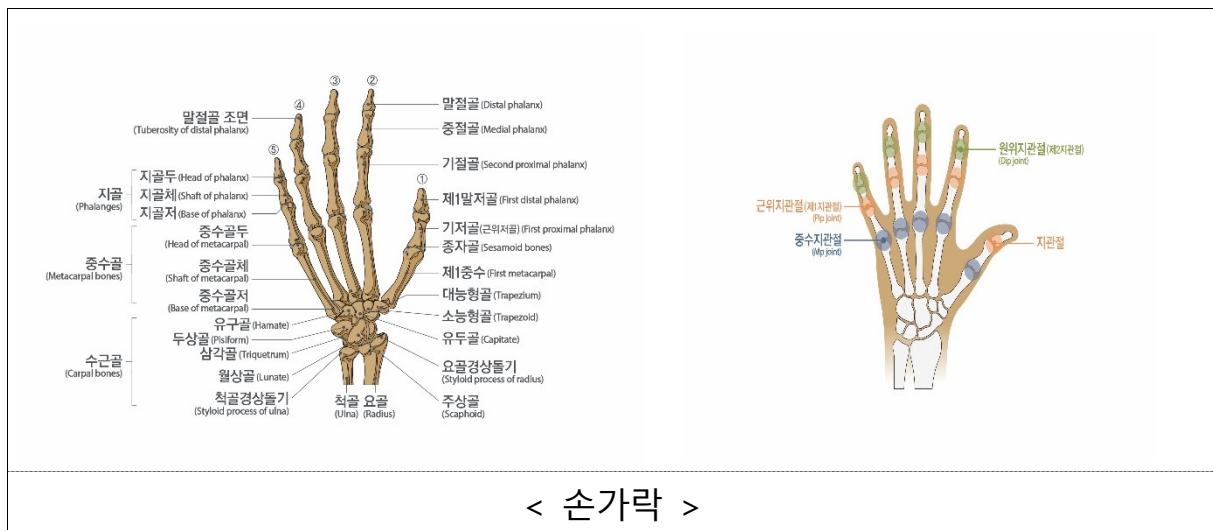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3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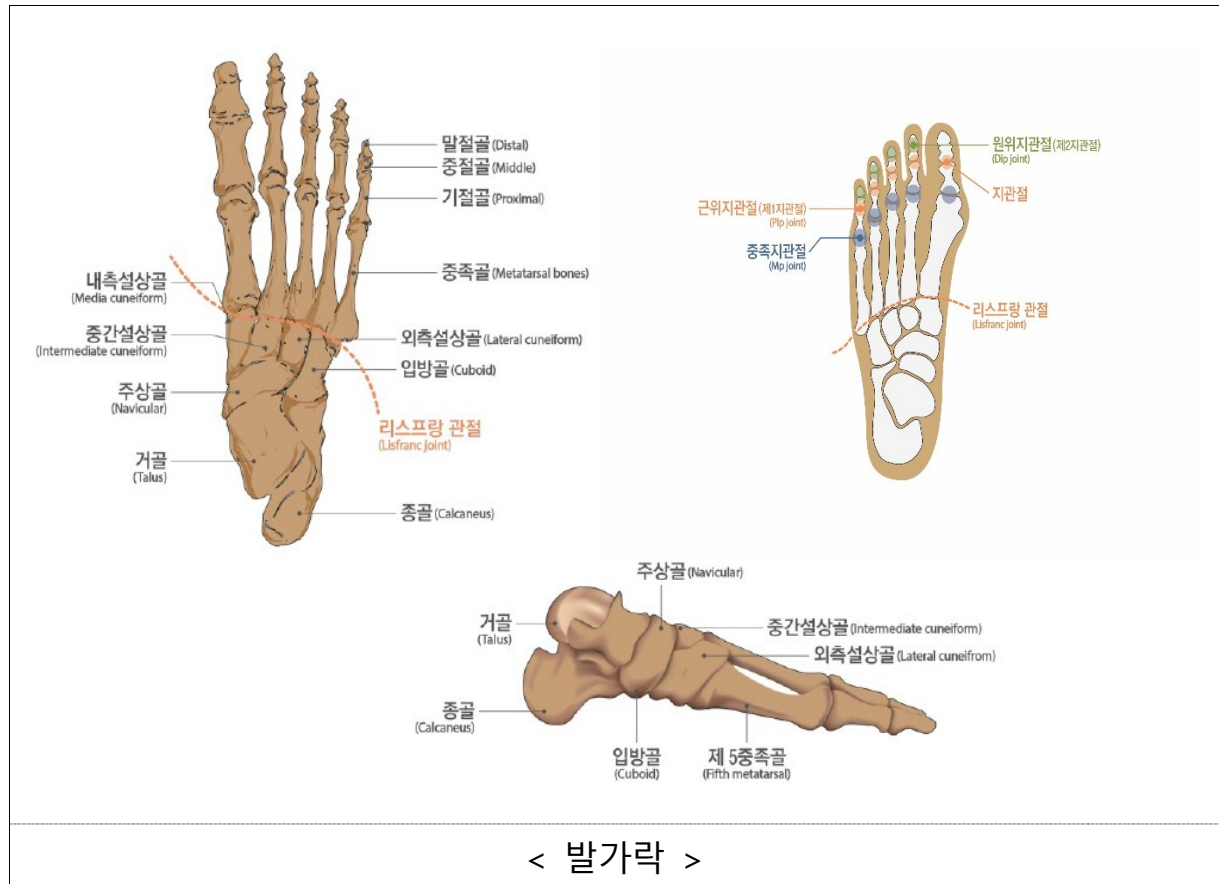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	5

다)	20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두 러한 장애를 남긴 때	8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두러한 장애를 남긴 때	3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두러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두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지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항목 및 비노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

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

- 가)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 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 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 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 하의 의복 착탈 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 하의 의복 착탈 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특약 약관

2014년 4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펀드추가 서비스특약 약관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특약의 적용】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변액보험 계약이고, 주계약의 계약자가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펀드 이외에 회사가 새로이 추가한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적용시점에 부가된 전환특약 등을 통하여 주계약이 변액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펀드 추가 및 계약자 안내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른 변액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펀드를 주계약의 펀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추가된 펀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서면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펀드 명칭 및 주요 투자대상
 2. 특별계정 운용보수(운행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
 3. 펀드 선택 제한 사항
 4. 기타 펀드 및 운영에 관한 특이사항 등

제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펀드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펀드 추가 및 계약자 안내에 관한 사항)에 따라 추가된 펀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펀드 선택 또는 변경에 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을 정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특약 약관**

2023년 1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인수부적합계약에 대한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보험료할증, 보험금감액 등)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 잃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3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따라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설: 할증위험률】

할증위험률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을 말합니다.

【해설: 표준체】

표준체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반위험률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계약자적립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되는 경우 계약자적립액에는 삭감기간별 보험금지급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별 보험금지급비율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1 년 이내	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 년 초과 2 년 이내			60%	50%	40%	30%
2 년 초과 3 년 이내				75%	60%	45%
3 년 초과 4 년 이내					80%	60%
4 년 초과 5 년 이내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설: 보험금이 계약자적립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되는 적용 예시】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료의 1,000% + 계약자적립액』인 경우 보험금감액법에 의해 삭감지급되는 보험금의 계산은 『기본보험료의 1,000% * 삭감기간별 보험금지급비율 +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가 실제 n 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 년증이라 칭하고 n 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 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 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제 5 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해설: 감액완납보험】

감액완납보험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 연장보험】

연장보험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7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령 부록

2026년 1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가나다 순)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은 2026년 1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

-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

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17조(적합성원칙)

① (생략)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생략)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생략)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

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생략)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서

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 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이하 생략)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생략)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하 생략)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 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

- 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

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상태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